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경매2계)
건명	이정아 소유물건 (2024타경3836)
감정서번호	가람 1624-10-1701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41)592-6888 FAX:041)592-6891

#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지사장 황 선 원

(인)

감정평가액	삼억이천이백삼십일만이천원정(₩322,312,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정아 (2024타경383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0.23	2024.10.21 ~ 2024.10.23	2024.10.2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토지	500	토지	500	118,000	59,000,000	
건물	182.3	건물	182.3	1,440,000	262,512,000	
제시외건물	(4.0)	제시외건물	4	200,000	8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22,312,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소재 “신성대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대전 지방방법원 서산지원 제출을 위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 가. 토지

기호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정미면 덕마리 140-7	500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지역	51,800

#### 나. 건물

기호	용도	구조	면적(㎡)	규모	사용승인일
2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2.3	지상1,2층	2013.12.27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0월 23일임.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4년 10월 21일 ~ 10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 가. 기준가치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 음.

## 5. 기타 참고사항

-본 건에 제시외건물(기호㉠:보일러실)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매됨이 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을 경우의 가격을 별지 '토지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비교란에 병기하였 음.

-본 건 토지는 일부가 현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어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지목에 따른 가격을 별지 '토지건 물 감정평가 명세표' 비교란에 병기하였음.

-본 건 토지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 바,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 람.

-대상물건의 토지 지적경계 및 현황은 지적도 등에 의한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확인하였는 바, 정확한 위치 및 지 적경계는 측량 등 필요한 조치가 요망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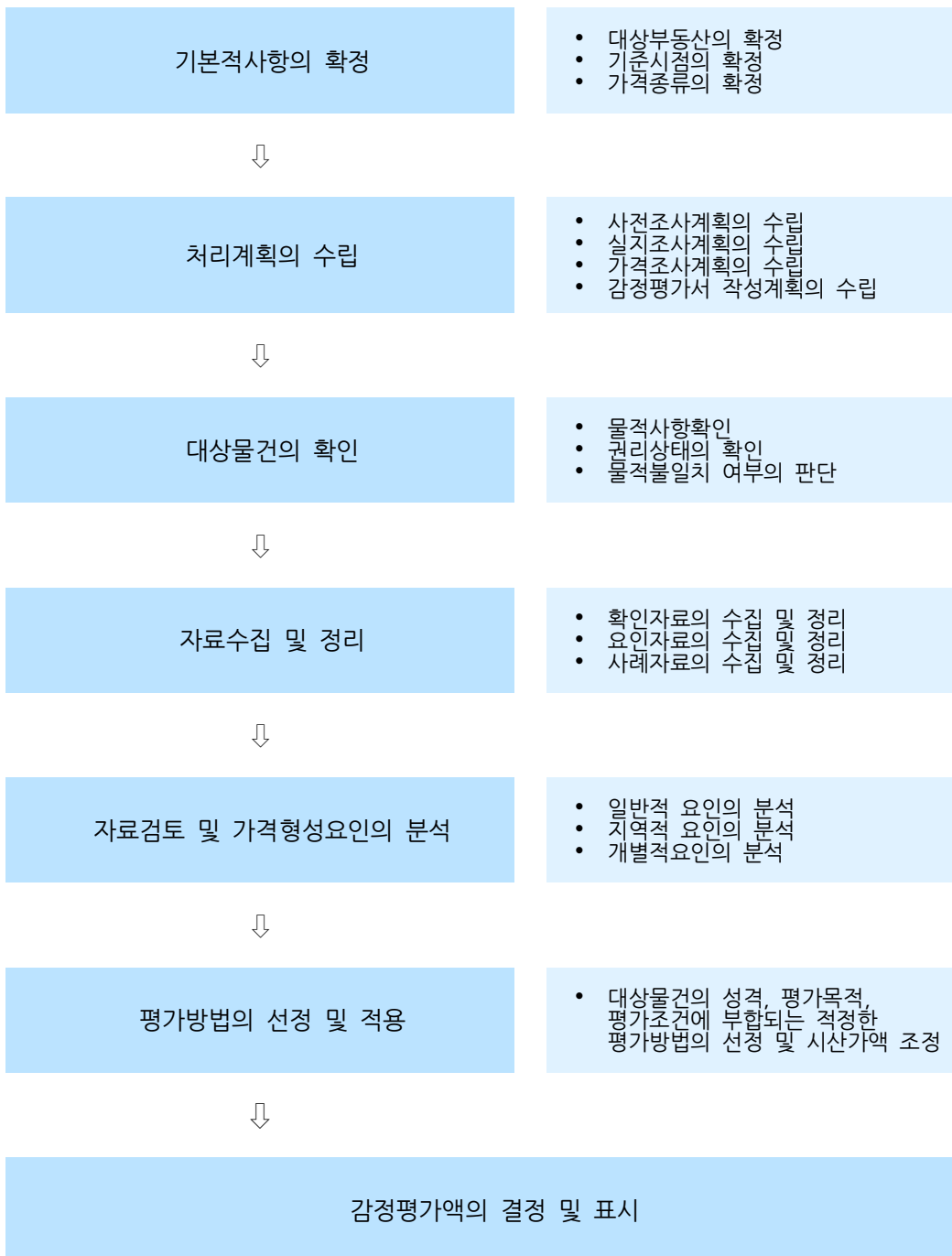
### 다. 본 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 건의 토지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본 건 건물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인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제시외건물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참작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토지단가(원/㎡)
			건물면적(㎡)					
#1	덕마리 136-19	대	530	계획관리	사다리형	2023-03-08	216,876,000	128,250
			92.2	단독주택	세로(가)			

▷ 건물구조 및 용도 :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 건물 추정가액 :  $92.2\text{㎡} \times (1,700,000\text{원}/\text{㎡} \times 38/40) = 148,903,000\text{원}$

▷ 토지 배분가액 : 전체 거래가격 - 건물 추정가액

① 전체 거래가격 (원)	② 건물 추정가액 (원)	③ = ( ① - ② ) 토지가격 배분액 (원)	④ 토지면적(㎡)	( ③ / ④ ) 토지단가(원/㎡)
216,876,000	148,903,000	67,973,000	530	128,250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전제하였음.

### 2. 인근 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도로 조건	면적 (㎡)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목적
#ㄱ	덕마리 140-9	대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세로(가)	312	117,000	24.09.20	법원경매
#ㄴ	덕마리 140-4	대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세로(가)	188	115,000	24.05.13	법원경매
#ㄷ	덕마리 136-23	대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세로(가)	1,232	97,000	24.06.07	담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 가. 비교 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로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 공시기준일 : 2024.01.01 )

본 건 기 호	비 교 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1	A	덕마리 151	350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평지	56,800

####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본 건 기 호	비 교 표준지	시 군 구 (산 정 기 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교
1	A	충청남도 당진시 (24.01.01~24.10.23)	계획관리	1.100% (1.01100)	2024.01.01 ~ 2024.08.31 : 0.807 2024.08.01 ~ 2024.08.31 : 0.170 ( 1 + 0.00807 ) * ( 1 + 0.00170 * 53/31 ) ≒ 1.01100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다. 지역요인의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라. 개별요인의 비교

###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 ■ 개별요인의 비교치

기호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결정의견	표준지(A) 대비 제반가격형성요인 대등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 (98두 6067(1998.7.10), 92누16300(1993.9.1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가) 비교사례의 선정

본 건 기호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A	#ㄱ

#### ■ 선정 사유

인근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건과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하고,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감정평가된 사례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도로 조건	면적 (㎡)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목적
#ㄱ	덕마리 140-9	대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세로(가)	312	117,000	24.09.20	법원경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산정

■ 비교표준지(A)/비교사례#ㄱ

비교사례 비교표준지	구분	사례가격(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②)
		공시지가(원/㎡)					
#ㄱ	① 사례기준 표준지가액	117,000	1.00186	1.00	1.000	117,218	2.06
A	② 기준시점 표준지가액	56,300	1.01100	-	-	56,919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 산출근거	사정보정	-						
	시점수정	충청남도 당진시 (24.09.20~24.10.23)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함.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A)는 비교사례(#ㄱ) 대비 제반가격형성요인 대등함.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비교사례를 종합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거래동향, 거래사례, 평가전례, 공시지가의 현실화정도, 지역의 개발정도 및 주위환경의 변화,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본 건 기호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A	2.06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토지 시산가액 = 표준지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기호	비 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A	56,800	1.01100	1.000	1.000	2.06	118,295	11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 가. 비교사례의 선정

본 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1

#### ■ 선정 사유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이고,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거래된 사례임.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토지단가(원/㎡)
			건물면적(㎡)					
#1	덕마리 136-19	대	530	계획관리	사다리형	2023-03-08	216,876,000	128,250
			92.2	단독주택	세로(가)			

▷ 건물구조 및 용도 :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 건물 추정가액 : 92.2㎡ x (1,700,000원/㎡ x 38/40) = 148,903,000원

▷ 토지 배분가액 : 전체 거래가격 - 건물 추정가액

① 전체 거래가격 (원)	② 건물 추정가액 (원)	③ = ( ① - ② ) 토지가격 배분액 (원)	④ 토지면적(㎡)	( ③ / ④ ) 토지단가(원/㎡)
216,876,000	148,903,000	67,973,000	530	128,250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사정보정치	1.000

###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본 건 기 호	비교사례	시 군 구 (산 정 기 간)	용도지역	시점수정치
1	#1	충청남도 당진시 (2023.03.08~2024.10.23)	계획관리지역	2.074% (1.02074)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본 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마. 개별요인 비교

###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 ■ 개별요인의 비교치

기호	비교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	1.00	1.00	1.00	0.92	1.00	1.00	0.920
결정의견	비교사례 (#1) 대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본 건 일부 도로)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함.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토지 시산가액} = \text{사례가격(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1	128,250	1.000	1.02074	1.000	0.920	120,437	12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V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 1. 재조달원가의 결정

#### 가.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건물표준단가 (원/㎡)		부대설비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용도, 구조, 급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계설비+전기설비+기타설비	=	

#### 나. 표준단가

(출처 : 건물신축단가표, 한국부동산원, 2023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1-1-5-8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아스팔트싱글	3	1,815,000	50 (45~55)

#### 다. 재조달원가의 결정

##### 1) 건물표준단가 결정

건물표준단가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등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상기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본 건 건물의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마감재 수준,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단가를 결정하였음.

기호	구 분	용 도	구 조	표준단가 (원/㎡)
2	1,2층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7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부대설비 보정단가는 건물 표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비용으로서 부대설비의 종류 및 현상, 시공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결정하였음.

기호	구분	용도	부대설비 보정단가(원/㎡)	비고
2	1,2층	단독주택	100,000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 3) 재조달원가의 결정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의미하며, 표준단가에 부대설비 등에 따른 보정단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기호	구분	용도	구조	표준단가 (원/㎡)	부대설비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2	1,2층	단독주택	철근콘크리구조	1,700,000	100,000	1,800,000

## 2.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의 산정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하되, 건물특성을 고려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단가를 산정하였음.

기호	구분	용도	재조달원가 (원/㎡)	내용연수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실제	유효			
2	1,2층	단독주택	1,800,000	50	10	10	40/50	1,440,000	1,44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건물가액의 결정

기호	구분	용도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적용단가(원/㎡)	건물가액(원)
2	1,2층	단독주택	182.3	182.3	1,440,000	262,512,000
합계			182.3	182.3	-	262,512,000

##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 가.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면적(㎡)	결정단가 (원/㎡)	결정된 토지가액 (원)
1	118,000	120,000	500	118,000	59,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건물

본 건 건물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인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기호	구분	용도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적용단가(원/㎡)	건물가액(원)
2	1,2층	단독주택	182.3	182.3	1,440,000	262,512,000
합계			182.3	182.3	-	262,512,000

###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토지	500	118,000	59,000,000
건물	182.3	1,440,000	262,512,000
제시외건물	(4.0)	200,000	800,000
합계			322,312,000

#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140-7	대	계획관리지역	500	500	118,000 (@120000) (@117000)	59,000,000	일부 도로 대일경우 단가 제시외건물 감안단가
2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동로 245-7	140-7 지상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2층 1층 2층	82.7 99.6	182.3	1,440,000	262,512,000	1,800,000 X 40/50
<b>합 계</b>								<b>₩321,512,000</b>	
				이 하	여 백				

# 제시외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140-7 지상	(보일러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4.0)	4	200,000	800,000	관찰감가
합 계								₩800,000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소재 "신성대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도로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 건으로 폭 약 3-4미터의 도로가 통과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보일러실)이 소재함.

##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일부 도로임.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13.12.27)

외벽 : 치장석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

## 2. 이용상태

1,2층 공히 주택으로 이용중임.

## 3. 설비내역

보통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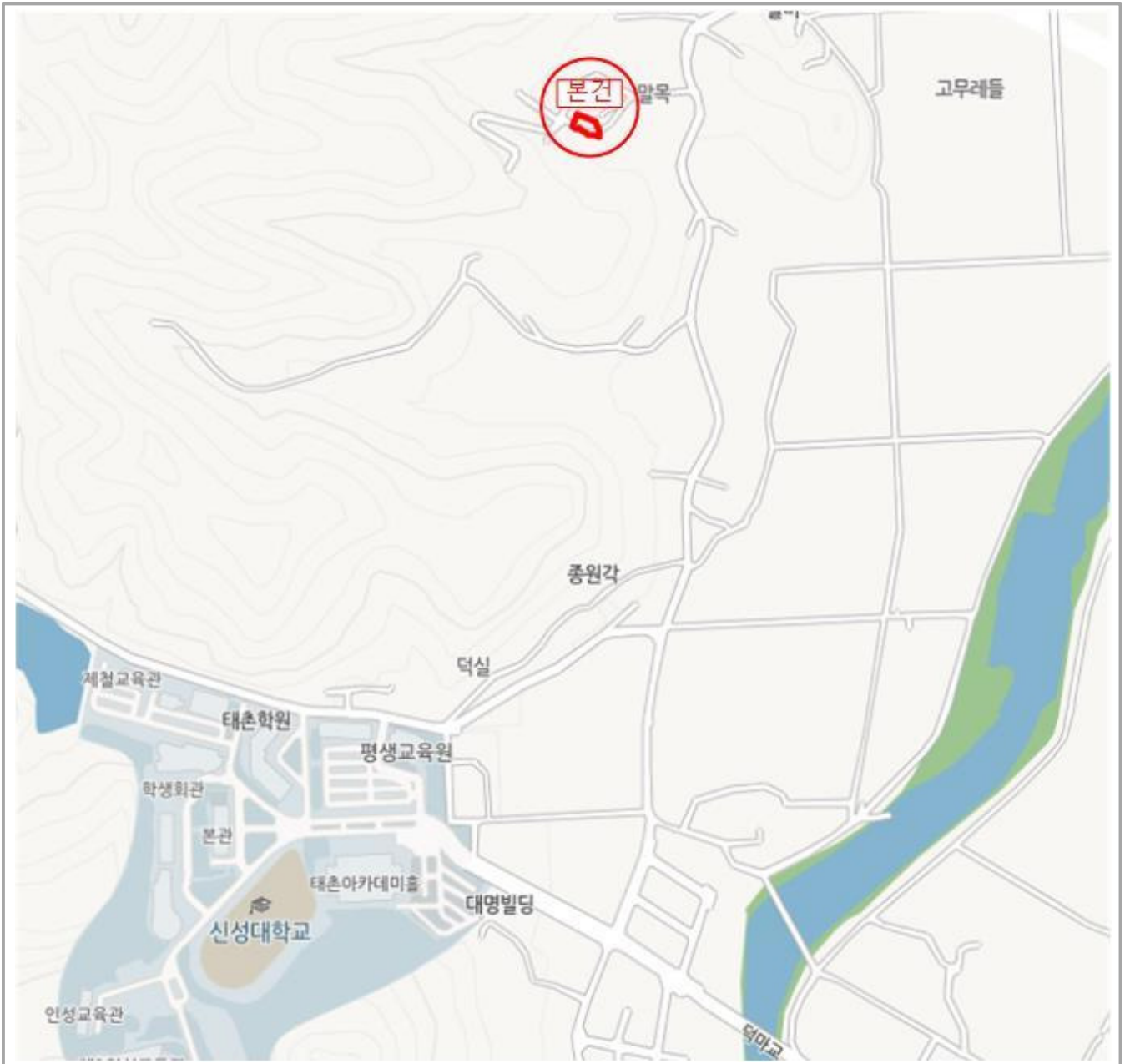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임.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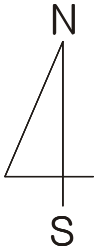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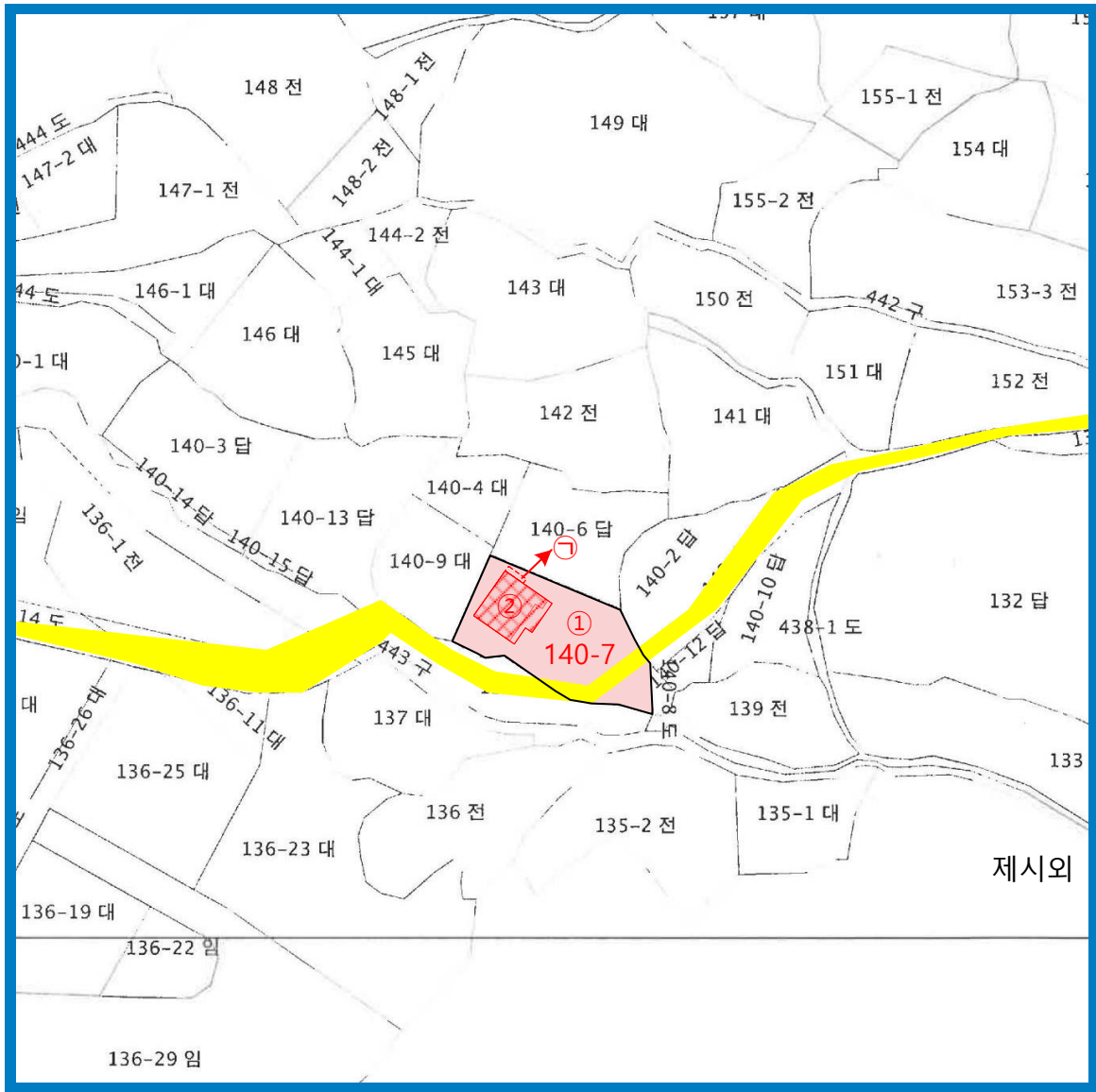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140-7



# 지적 및 건물개황도



FRE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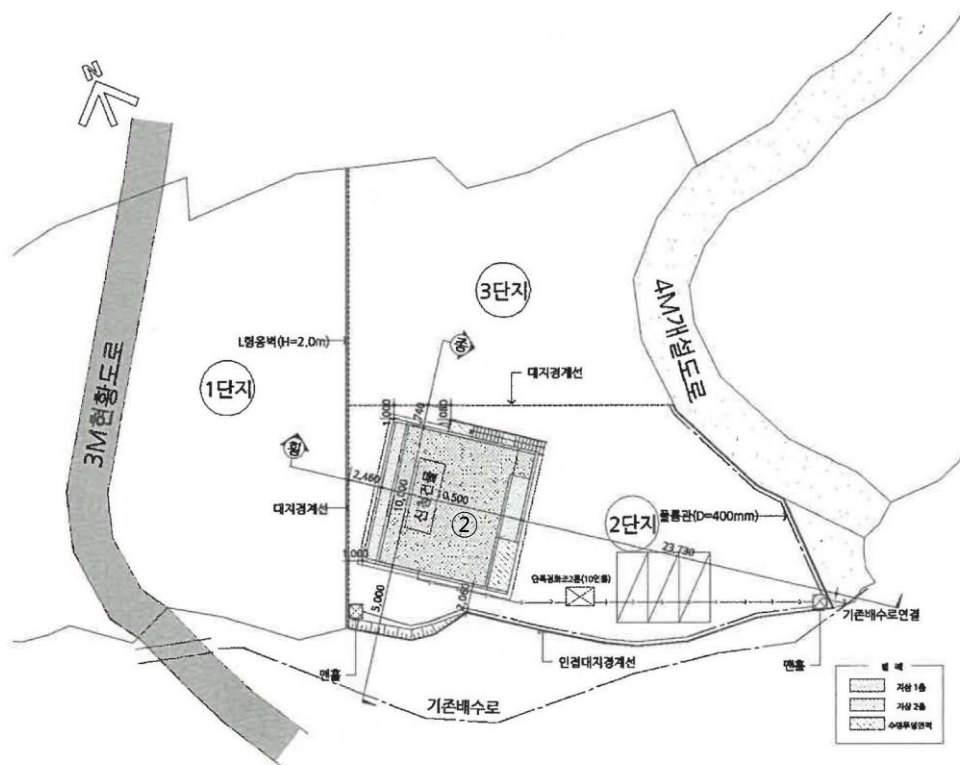


표시구분     본건     도로     일층     이층   

제시외

# 건물면적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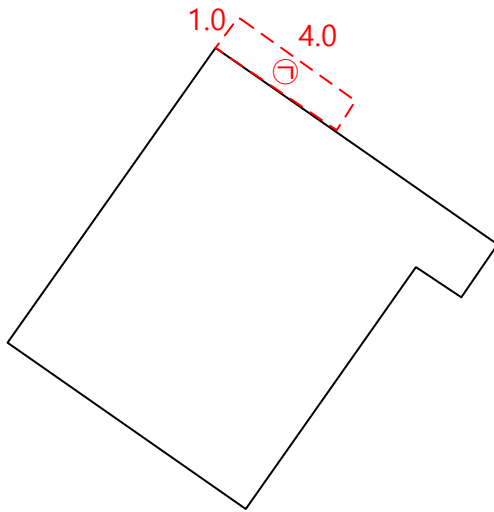
FRE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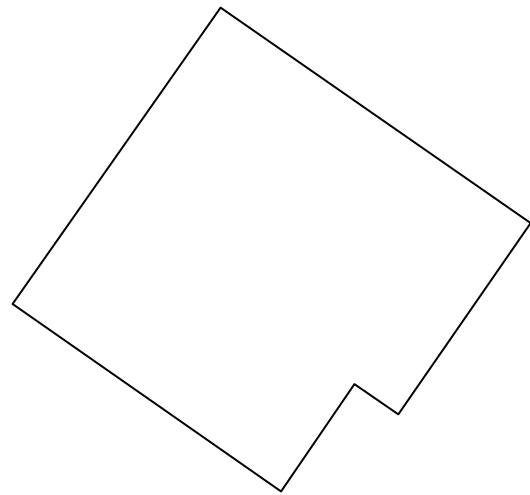
<건물②>

# 건물면적 산출내역

FREE SCALE



건물② 1층



건물② 2층

<건물면적 산출내역>

② 1층 : 82.7m<sup>2</sup>

② 2층 : 99.6m<sup>2</sup>

<제시외건물>

㉠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 약 4m<sup>2</sup>

# 사 진 용 지



<전경>



<전경>



<기호② 전경>



<주변환경>

#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



<이동가능한 컨테이너하우스>